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에 따른
2018년도 인센티브 지급계획 공고

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포장재의 재질·구조개선을 촉진시키고자 재활용이 어려운 2·3등급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으로 재질·구조개선을 한 포장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오니 공제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18. 1.

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

1. 지급대상 포장재

○ 포장재를 구성하는 몸체·라벨·마개·잡자재 등 모든 항목이 '15. 1. 1. 이후 재질·구조개선되어 '18년 중 개최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존 2·3등급에서 1등급으로 심의·의결된 포장재

- 단, PET병 몸체만 재질 개선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(PET병 몸체는 현재 재질별·색상별로 분담금 단가 차등화 적용)

2. 지급대상 업체 : 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공제회원사

3. 재질별 인센티브 지급률

재 질 / 지급률	종이팩	유리병	금속캔	발포 합성수지	페트병	기타 합성수지
인센티브 지 급 률	5%	10%	10%	10%	20%	10%

4. 지급대상 출고량

○ 공제조합이 1등급으로 심의·의결된 포장재로 통보한 월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출고량

5. 인센티브 지급액

인센티브 지급액 = 지급대상 포장재의 대상기간 출고량에 따른 분담금 × 인센티브 지급률

6. 인센티브 신청시기 : 지급대상 출고량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통보 이후 (매년 7월 31일 이후)

7. 인센티브 지급시기 : 지급대상 업체에 추후 개별통보

8. 지급 한도액 : 18억원

※ 해당 포장재 출고량 확정시기로 인하여 실제 2019년에 지급

9. 지급 조건

○ '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' 등 제출서류 원본이 접수된 업체의 인센티브 지급 예정 월 현재 분담금 미납내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

※ 제출서류 서식은 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 참조 바람

10. 지급대상 출고량 확인

○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에 첨부되는 해당 포장재의 인센티브 대상기간 중 월별 출고량 자료와 인센티브 대상기간 직전연도의 월별 출고량 자료 비교

○ '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결과 통보(매년 7월 31일)' 이후 출고량 변경 여부 확인

11. 신청 및 지급절차

인센티브 지급 계획 공고 (공제조합)	· 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인센티브 지급계획 공고 –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 및 안내공문 발송 (공제회원사)
⬇	
재질·구조개선 평가신청서 제출 (의무생산자)	· 『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평가 신청서』 제출
⬇	
평가·심의 (평가심의위원회)	·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및 평가·심의
⬇	
평가결과 통보 (공제조합)	· 신청자에게 평가결과 통보 (위원회 개최 후 14일 이내)
⬇	
인센티브 지급신청 안내 (공제조합)	· 인센티브 지급대상 업체에 개별 안내
⬇	
인센티브 지급 신청 (의무생산자)	· 『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』 제출
⬇	
신청서 검토 및 지급액 산출 (공제조합)	· 인센티브 지급액 산출 및 확인 – 필요 시 출고량 증빙자료 추가 요청
⬇	
인센티브 지급 통보 (공제조합)	· 지급내역 및 지급방법 통보 · 세금계산서 발행
⬇	
인센티브 지급 (공제조합)	· 해당 포장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

11. 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처

○ 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연구소

☎ 02-6948-8781~2

※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포함하여 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평가신청 등 제도 전반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제조합 연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덧붙임 : 포장재 재질・구조개선 제도 개요(등급 기준 포함) 1부. 끝.

< 덧붙임 >

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제도 개요

○ “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제도”란 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9조의2에 의거,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의 설계·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쉽도록 재질·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임

< 관련 법률 >

- 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9조의2
- 『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』(환경부 고시 제2017-140호)
- 『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제도 운용지침』(환경부 예규 제534호)

○ **(재질·구조개선 대상 품목)**

재활용의무 대상(EPR 대상) 포장재 중 새로 출시된 포장재 또는 기존 포장재 중 재질·구조개선이 필요한 포장재

* EPR 대상 포장재 : 종이팩, 유리병, 금속캔, 발포합성수지, 페트병, 기타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

○ **(대상 업체)**

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

○ **(기준 및 등급)**

- 기준 : 6대 포장재에 따른 세부기준 설정
- 등급 : ‘재활용 용이’(1등급), ‘재활용 어려움’(2·3등급)

※ 『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제도』 및 등급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제조합 홈페이지 참조